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조문별 개정이유서

2022. 1.

금 융 위 원 회

1.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(안 제14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現 신청법령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가 아닌 타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·이용하려는 경우에도,
 -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을 위한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있어,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·활용하는데 애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결합의뢰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을 분리규정하여,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결합의뢰기관으로서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2.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(안 제14조의2제3항제2호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現 결합제도에서는 샘플링하여 결합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·결합하여야 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 ‘샘플링 결합’ 절차 도입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샘플링 결합 선택시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데이터 결합 수행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3. 신용정보원 업무 범위 확대(안 제21조의2제2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신용정보원이 기 수행중인 신용정보 표준화 업무 관련 법적 수행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신용정보원의 업무에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4.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명확화(안 제22조의4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‘결합전문기관’으로도 지정된 경우 결합전문기관 업무 수행가능 여부 및 업무 분리 여부 등이 불명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가능하며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5.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의무 합리화(안 제30조제4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신용정보가 전송된 경우에도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불합리한 측면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신용정보가 제공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용정보회사등의 조회시스템 구축 부담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6.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(안 제30조의3제3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를 신정원, CB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(서면, 전화, 이메일, 문자 중 택1) 필요
 -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, 통지방법도 제한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통지일을 최소 7일에서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, 통지방법도 확대(스마트폰 앱 등 가능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회사 등의 통지의무 준수 부담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7. 공공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 통지방법 명확화(안 별표2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신정법(제23조, 제32조제6항제10호 등)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으나, 제공시 정보주체 통지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일부터 6개월 내에 문자, 이메일,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토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제공시 통지의무 이행 방법을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